

# 음식점도 '식사시간 2부제'...식탁 칸막이·1인상 유도



정부가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식사시간 2부제' 등 음식점 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정부 "감염에 취약 장소...밀집·밀접·밀폐 방지에 중점"

"식품위생법령 개정 추진...위반시 영업 정지 등 담을 것"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은 감염에 취약한 장소"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밀집, 밀접, 밀폐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불침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사시간 2부제는 식사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눠 일정 인원 이상의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통 회사 구내식당 등에서는 점심시간을 1부 오전 11시 30분

~12시 30분까지, 2부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또 식당 내 좌석간 타인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식탁 위 칸막이 설치와 1인상 제공을 유도한다. 실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 급식소는 현재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또는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 이용자에게는 입장 전 손씻기 또는 손 소독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는 음식점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의 방역조치가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집합금지 명령 위반시 영업 정지 등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 무증상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발열 없으면 전실 가능  
연속 2회 음성 격리해제  
원활한 병상 수급 목적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실·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원활한 병상 수급이 목적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과 바이러스 배양연구 결과를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 변경과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을 개정했다"며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유전자 검사법(RT-PCR)은 감염력이 없더라도 죽은 바이러스 사체나 조각으로 인해 '양성'을 판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경우 감염력이 없어도 격리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한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번 관련 기준 변경으로 병상 수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당초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 양성이면 이후 7일 뒤(확진 후 14

일째) 검사, 이 때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임상적 상황만으로도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임상경과 기준에 따라 확진 후 10일간 증상이 없는 경우다. 또는 검사 기준으로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24시간 이상 간격 PCR 검사결과, 연속 2회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유증상 확진자는 기존에는 발병 후 7일이 지나 △해열제 복용없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음성,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또는 발병 후 7일이 지나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면 그 뒤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해제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발병하고 4일이 지난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확진자가 없었다"며 "발병한 첫날 또는 발병하기 전날 감염성이 굉장히 높고, 5일이 지나가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는 기준과 바이러스 배양 검사에서 10일 정도까지는 배양이 되지만 그것을 지나서는 배양률이 굉장히 낮을 두 기준을 갖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전두환 연희동 집' 몰수 재판 1년만에 열려...검찰 "차명재산"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 명의...부동산 압류처분 부당"

현재 "전두환 추정법 제3자 재산압류는 합헌" 판단

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할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4일 전씨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1979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 중 1050억원을 미납해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압류처분 중인데 전씨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

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그간 전씨 측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검찰은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절차"라고 맞받았다.

이날에도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채 건물과 정원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의 경우 본인 명의로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변호인이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리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부동산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씨 차남인 재용씨가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빌라 등에 대해



서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신설되기도 전에 압류한 거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 자체를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전씨의 불법 재산과는 관계없는 재산임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6일 오전 다시 한번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재판은 1년여 넘게 열리지 않다가 지난 2월 이른바 '전두환 추

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재개됐다. 현재는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재산이라면 제3자를 상대로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순자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연희동 자택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 사형 선고때 소란 피웠던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에 '조용'

"피해망상·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명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가 24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10분 남짓한 주문을 읽는 동안 피고인석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감형을 받은 뒤 조용히

퇴정했다. 앞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큰소리를 치던 모습과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였다.

반면, 피해 유족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항소심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



온 유족들은 20분이 넘도록 법원의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근 채 눈물만 흘렸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